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

2000. 9.25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0년 9월 9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2000년 9월 25일(제179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)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교육청 교육국장 이주원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. 3.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.(안 제2조)
-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.(안 제3조)

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

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 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 4.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.(안 제4조)
 -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.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박범수)

-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. 3.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·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번호	제 334 호
의결 년 월 일	2000. (제 회)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년월일	2000. . .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
번호

334

제출년월일 : 2000. 9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관 련 부 서 :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

제정사유

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. 3.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.(안 제2조)
-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.(안 제3조)
 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
 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 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 4.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(안 제4조)
-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.(안 제5조)

제정근거

- 평생교육법 제13조 제4항

조례안 : 붙임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을 지정·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운영)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
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4.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
제4조(지원)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 징수)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